

한국·조선인BC급전범희생자추도제

일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전11시~12시

장소 :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주최 : 한국·조선인BC급전범자「동진회」, 한국BC급전범유족회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 순

사회 :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 희생자를 위한 묵념
- 주최단체 대표 헌화 (이학래, 강도원)
- 추도사 I : 이학래회장(동진회)
- 추도사 II : 강도원회장(유족회)
- 추도사 III : 전기호위원장(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헌화 및 분향
- BC급전범희생자 묘비 참배

한국·조선인BC급전범자「동진회」/한국BC급전범유족회

망향의 동산 안장 BC급전범희생자 신위

【천광린(千光麟)】

일본명 : 千葉光麟 / 경성출신 / 1946.1.23 영국군 전범재판에서 교수형 언
도 / 1947.1.20 사형집행 / 망향의 동산 무궁화 가 22-15 안장

【박성근(朴成根)】

일본명 : 木村成根 / 군산출신 / 일자 미상 네덜란드군 전범재판에서 총살형
언도 / 1947.2.3 사형집행 / 망향의 동산 무궁화 가 22-14 안장

【임영준(林永俊)】

일본명 : 林永俊 / 남원출신 / 1947.3.17 네덜란드군 전범재판에서 교수형
언도 / 1947.6.18 사형집행 / 망향의 동산 무궁화 가 22-13 안장

【허영(許榮)】

일본명 : 岡野榮 / 부여출신 / 1946.9.6 영국군 전범재판에서 10년형 언도 /
1951.12.15 스가모형무소에서 출옥 / 일본 埼玉縣에서 사망 / 망향의 동산
무궁화 가 22-12 안장

【이선근(李善根)】

일본명 : 河本武雄 / 개성출신 / 1947.11.10 네덜란드군 전범재판에서 12년
형 언도 / 1952.1.22 스가모형무소에서 출옥 / 일본 東京都에서 사망 / 망향
의 동산 장미 가 22-29 안장

【김종연(金鍾淵)】

일본명 : 金宮鍾淵 / 개성출신 / 1948.8.9 호주군 전범재판에서 12년형 언도
/ 1952.3.6 스가모형무소에서 출옥 / 일본 東京都에서 사망 / 망향의 동산
장미 가 22-28 안장

追 悼 辭

여러 親旧들의 靈位에 삼가 追悼辭를 올립니다.

太平洋戰爭이 끝남과 同時에 日帝 支配로부터 解放된 祖國은 形言하기 어려운 困難을 거쳐 現在 堂堂한 獨立國家의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各 遺族께서 地域社會에서 生業에 專念하고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942年 6월에 日本軍의 強制徵用으로 動員되어 聯合軍의 捕虜監視員으로 從事하였습니다. 戰後에는 日本軍의 責任轉嫁로 聯合國 軍事裁判에 依하여 親旧 23名이 死刑, 125名이 有無期形으로 処斷되었습니다.

現地에서 服役하다가 1957年 4월에 日本巢鴨刑務所에서 釈放되어 歸國한 同僚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故鄉의 家族을 생각하면서도 他鄉인 日本에서 居住하게 되어 高齡이 되거나 運命을 달리한 親旧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恒常 強制動員에 對한 負債感과 戰後國家復興事業에 아무런 寄與도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罪悚스럽게 생각합니다.

多幸히도 韓國 政府는 2006年 日帝強占下強制動員 被害真相糾明特別法에 依하여 BC級戰犯은 強制動員의 被害者로 認定하였습니다.

半世紀 以上 기나긴 運動中 제일 뜻깊은 일이며, 대단히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德沢으로 2007年 2月에는 戰後 62年만에 遺族会를 創立하고, 오늘은 祖国에서 慰靈祭를 举行하게 되어 참으로 感慨無量합니다.

억울하고도 無辜한 罪를 입고 死刑당한 親旧들, 釈放後 苦難한 生活속에서 他界한 親旧들의 怨恨을 多少라도 풀어 주게 되어 千萬多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BC級戰犯에 對한 理解와 支援을 要請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日本政府에 對해 半世紀 以上 지속적으로 運動을 展開하여 지난 5月 29日에 民主黨을 中心으로 日本 衆議院에 BC級 戰犯에 對한 法律案인 「特別聯合國裁判被拘禁者에 對하여 特別給付金支給에 關한 法律案」을 提出했으며, 하루빨리 審議議決하여 成立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微力하나마 積極적으로 運動을 展開하여 조속히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여러 親旧들이 꿈에도 보지 못한 그리운 祖国에 돌아왔습니다.

부디 安眠하십시오.

그리고 韓日 兩國의 親善과 저희들을 보살피 주시길 바라며, 삼가 冥福을 빕니다.

2008年 6月 23日

韓國·朝鮮人BC級戰犯者同進會

李鶴來 合掌

추도사

제2차세계대전이 종전된지도 어언 60여성상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에서 태어나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전쟁수행을 위하여 연합군의 포로감시원으로서 강제로 끌려가 태국, 말레이시아, 자바 등지에서 복무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 분들은 연합국의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2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125명이 유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인 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일본군의 잔혹한 포로 정책으로 인해 '전범자' 또는 '친일부역자'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당사자와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억울한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도, 정당한 배상도 미진한 과제로 남겨두어 먼저 고인이 된 선조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의해 그리운 고국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먼저 가신 선조들의 원혼이나마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세기 불행했던 한 시기로 인해 많은 희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우리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 투혼을 다하려 합니다.

진정한 한·일간의 화해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기원하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구천에서라도 평안한 안식을 구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이곳 따뜻한 고국땅에서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2008. 6. 23

한국BC급전범자유족회를 대표하여

강도원 올림

추도사

연합국전범재판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0여 년 전 일제의 강제동원이 빚어낸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원혼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이면서도 일제의 협력자라는 일부 의혹 어린 시선 속에서 오랜 세월 억울함을 삭이며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해방이 되고 나서도 6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48명의 한국(조선)인 연합국전범재판피해자들은 2차대전을 일으킨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민으로 일본이 수행한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해방은 고향으로의 귀향이 아닌 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전가당한 채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은 분들은 처음부터 전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26일 제20차 위원회에서 한국(조선)인 BC급 전범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진심어린 감격의 표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피해자 분들의 명예회복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조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한분을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국(조선)

인 BC급 전범 피해자의 명예회복, 추모사업 등은 이제 조금씩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그들이 부당하게 처우한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양식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한일 양국은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60년이 훨씬 지났지만, 한국(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실태조사나 유골수습 봉환 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가해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조선)인 희생자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억울한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 한을 풀어준 다음에야, 한일 양국이 과거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한일 관계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데 양국민이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혼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기호

【참고자료 I】

제 목 :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

청원인

성명 : 이 학 래 (인) 외 1명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 (02)969-0226, FAX : (02)965-8879

청원일자 : 2007년 4월 27일

1. 청원의 취지

청원인 한국인 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일제에 의해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어 복무하다 해방후 연합군에 의해 전범재판에 의해 사형 또는 유기형을 선고받고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들입니다.

저희 한국인 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일본군의 잔혹한 포로정책으로 인해 '전범자' 또는 '친일부역자'라는 오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당사자와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일본정부기록에 의하면 한국인 BC급전범자들도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야스쿠니신사에 강제로 합사되어 있어 또다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 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이 모든 희생의 근원이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있으며, 그간의 불명예를 씻고 억울한 희생자

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우리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금번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청원의 내용

저희 한국인 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정부 와 국회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 대하여 한국인BC급전범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민간 연구자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인BC급전범자 문제의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역사에 남을 자료관을 건설,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비 건립과 동시에 역사교과서 등에도 기술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정부는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BC급전범자들의 무단합사를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즉각 철폐하도록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의 최종 해결될 때까지 공식 외교회담에 의제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청원의 배경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히로히토일왕의 항복선언으로 비극적인 세계2차대전은 종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침략전쟁을 도발한 전범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연합국은 동경제판과 별도로 아시아 각지에서 B.C급전범재판을

추진하여 일본군의 포로학대의 죄를 단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B.C급 전범가운데 조선인과 대만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왜 그들은 전범자로 몰려야 했으며, 형장의 이슬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전범자’또는 ‘전범자의 자식’, ‘친일부역자’ 또는 ‘친일부역자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오명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

일본 육군성은 1942년 5월 대만인·조선인을 군속으로서 연합국 포로의 감시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포로처리요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선전역에서 경찰과 면사무소 등에서 모집이 반강제적으로 행해졌고 1개월에 3,223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들은 노구치부대¹⁾에서 혹독한 군사교육을 받은 후 8월에 타이, 말레이시아, 자바의 포로수용소로 배속되었습니다.

일본은 포로의 대우를 정한 제네바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준용할 것을 연합국 측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약을 무시하고 연합국의 포로를 강제노동에 종사시켰습니다. 포로는 충분한 식량이나 의약품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사나 병으로 차례로 사망하였고,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태면철도²⁾ 건설공사는 총 길이 414.916km로 연합군 포로 5만 5,000명, 동남아시아에서 끌려온 노무자 7만명이 동원되어, 1만3000명의 연합군 포로, 3만 3,000명의 노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5년으로 잡혔던 공기를 1년 3개월(1942년 7월~1943년 10월)로 단축할 만큼 강행군의 연속이었고, 이들에 대한 감독과 감

1) 野口部隊. 조선인 포로감시원을 훈련하기 위해 편성된 「陸軍釜山西面臨時軍屬教育隊」의 통칭. 隊長노구치(野口)육군대좌의 이름을 따서 불려졌다.

2) 泰緬鐵道. 일본군이 임파르작전의 물자수송을 위해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건설한 철도

시의 최말단에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포로감시 정책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의 여세를 몰아 이른바 '4대 진공작전'을 전개하면서 남방을 파죽지세로 공략하는 과정에서 연합군 포로의 처리문제로 일본군은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연합군 포로는 모두 26만 1,000여명. 인도네시아 자바 작전 한 곳에서만 무려 9만 3,000명의 연합군이 무더기로 항복,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은 포로의 대우를 정한 제네바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준용할 것을 연합국측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약을 무시하고 연합국의 포로를 강제노동에 종사시켰습니다. 일본은 전쟁법규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포로감시원의 악역을 식민지국 출신들로 채우는 잔인한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포로감시원 모집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가급적 동원을 피하기 위해 성병에 걸렸다고 속여가면서 응집되지 않으려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포로감시원의 모집은 자발성을 위장한 강제연행이었습니다.³⁾

조선인 B.C급 전범

종전과 더불어 아시아 각지에서 벌어진 B.C급 전범재판으로 포로와 포로감시원의 입장이 역전되면서, 조선인 포로감시원도 차례로 재판에 붙여져 충분한 심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48명이 유죄를 언도 받고 이 가운데 23명이 장기형무소⁴⁾ 등에서 사

3) 한국인BC급전범 생존자 이행석 진술

4) 싱가포르섬 동단에 위치한 형무소

형에 처해졌으며 125명이 유기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했습니다.

침략전쟁의 주범인 A급 전범으로 처형된 일본인들은 7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오히려 침략을 당했던 식민지 조선인의 경우 23명이나 총살형 또는 교수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전쟁을 도발한 히로히토 일왕은 아예 면책됐고, 731부대 생체실험의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 중장의 경우 미국에 실험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A급 전범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조선인은 일본국적을 잃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스가모형무소(동경소재)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1952년 6월 복무중의 한국·조선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속될 근거가 없다」고 동경지방법판소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석방청구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동년 7월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형 당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잔여형기를 마쳐야 출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BC급전범은 스가모형무소를 출소하였으나 가석방의 신분으로 출국이 불가능했고, 「대일협력자」라는 불명예로 인하여 조국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이국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야 했으며, 생활고로 인하여 출소직후 2명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범택시회사와 동진회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 전범은 1955년 4월 상호부조 조직으로 「동진회」를 결성하였고, 수상에게 국가보상과 생활보장, 사형자의 유골송환등을 요청하였습니다. 1956년에는 사형자의 유족에게 500만엔, 유기형자에게 포로가 된 날로부터 출소일까지 일당 500엔으로 요구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1955년 7월 「清交會」를 설립하고, 출소자를 위해 일시 거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57년에 생활자금으로 1인당 5만엔, 58년에는 위로금 명의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것과 생활보

호적인 시책을 강구하였으나, 한국인BC급전범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BC급전범자들은 민족적인 차별과 취직난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동진회는 1960년 11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마이(今井知文)씨의 자금원조를 받아, 동진교통(택시회사)을 설립하고 회원의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구체화하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성의를 표시하고자 한다」 5), 「성안을 관방관에게 제출했다. 유골, 보상, 금후의 생계를 골자로 했다」 6)고 했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일본정부는 「보상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며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 B.C급 전범자들은 91년 11월 12일 국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재판을 동경지방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1999년 12월 20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결국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99년 11월에 「한국·조선인 「B.C급전범자」의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보상입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15해방으로 온 나라가 희열에 들떠 있을 때, 혹은 형장의 이슬로, 혹은 형무소의 수형자로서 일본과 조국을 원망해야 했던 조선인 B.C급 전범자들에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BC급전범과 한일청구권 협정

우리 정부는 2005년 8월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했

5) 58년 4월 와타나베내각심의관

6) 63년 3월 近藤내각참사관

습니다. 공개문서에 따르면 「동진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1965.7.5 「동진회」의 청구권협정과 한국인BC급전범자의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본건 연합국의 승리 및 전쟁후의 전범재판에 기인한 한국인 전범의 피해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청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협정조인 이후에 국내조치로서 개인청구권의 보상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고려의 대상밖임”이라고 밝히고 “일본에 거주하는 본건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그 보상사유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일층에 촉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당당하게 한국인BC급전범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인BC급전범의 일본국가배상청구재판 판결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1991년 11월 12일 도쿄지방법판소에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소하였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1998년 7월 항소심 판결에서,

“... 전범자 항소인들에 대해서 보면 유사한 일본인, 혹은 대만주민과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법조치가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입법부의 재량의 범위를 면탈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취해지기를 요망하는 것은 명백하다...국정관여자에게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를 강구해 줄 것이 기대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조차 동일하게 입법을 통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정부는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한계수명에 다다르고 있는 작금까지 아무런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여 금번 우리 국회에 상기 취지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판정

「동진회」 회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와 진상조사신청을 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강제동원피해자'로 판정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인BC급전범자들이 전범재판 자체가 합리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 포로정책을 입안 수행한 책임자보다 말단의 최전선에 배치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출신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수많은 포로 희생자의 책임을 떠안고 죽어갔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들은 우리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하여 '강제동원피해자'로 판정하여 명예회복을 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향후 일본정부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범으로서 처벌받고, 일본인 전범자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당당하게 명예회복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촉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4. 청원인 소개

이학래(李鶴來)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장기형무소 수감중 전범재판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중 감형되어 스가모형무소로 이송, 잔여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현재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현 「한국인·조선인BC급전범자 동진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강도원(姜道元)

부친이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장기형무소 수감중 전범재판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처형된 BC급전범희생자의 유족.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국인BC급전범유족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의 역사규명을 연구와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서울 청량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인BC급전범자와 유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Ⅱ】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 등에 대한
특별금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2008년 5월 29일 중의원 의원 제출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정신에 입각하여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특별금부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대해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란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11조에서 언급한 재판에 의해 구금된 사람이며, 동조약 제2조a 또는 b에서 언급한 지역에 본적을 가지고 있던 자를 말한다.

(특별금부금의 지급 및 제정)

제3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행일의 전날까지 사망한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의 유족에게는 특별금부금을 지급한다.

2. 특별금부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제정은 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청구를 근거로 총무대신이 실시한다.

(유족의 범위)

제4조 특별금부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에 있어서의 배우자, 자녀(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태아인 아이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및 이를 이외의 삼촌이내의 친족(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유족의 순위 등)

제 5 조 특별급부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유족의 순위는 다음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의 부모에 대해서는 양부모를 우선하고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조부모에 대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우선하고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1) 배우자(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날 이후 시행일의 전날 이전에 전조에서 규정하는 유족(이하 이 항에 대해 「유족」이라고 한다.) 이외의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또는 유족 이외의 사람과 혼인 한 사람을 제외하다.)
- 2) 자녀(시행일에 유족 이외의 사람의 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3) 부모
- 4) 손자(시행일에 유족 이외의 사람의 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5) 조부모
- 6) 형제자매(시행일에 유족 이외의 사람의 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 7) 제2호의 순위로부터 제외된 자녀

- 8) 제4호의 순위로부터 제외된 손자
- 9) 제6호의 순위로부터 제외된 형제자매
- 10) 제1호의 순위로부터 제외된 배우자
- 11) 전호에서 거론된 자 이외의 유족으로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모시는 자
- 12) 전호에서 거론된 자 이외의 유족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급부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순위에 있는 유족이 시행일 이후 계속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 동순위자가 없을 때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며, 당해 차순위자(당해 차순위자와 동순위의 다른 유족이 있을 때는 그 모든 동순위자)를 특별급부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순위의 유족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동순위의 유족이 몇 사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한 명이 한 특별급부금의 지급의 청구는 전원을 위해서 그 전액에 대해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한 명에 대해서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재정은 전원에 대해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구 기한)

제6조 특별급부금의 지급의 청구는, 시행일부터 기산해 5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기간내에 특별급부금의 지급의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특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급부금의 액수)

제7조 특별급부금의 액수는 특정연합국제판 피구금자 한 명에 대해 3백만엔으로 한다.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특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망 한 사람의 사망한 날로부터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이연(離緣)에 의해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가 종료한 유족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시행일에 있어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아야 하는 사람(형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자로 시행일에 있어서 그 언도가 삭제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특별급부금의 지급받을 권리의 승계)

제9조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한 사람이 그 사망전에 특별급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사망한 사람의 특별급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몇 사람 있을 때는 그 한 명이 행한 특별급부금의 지급 청구는 전원을 위해서 그 전액에 대해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한 명에 대해서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재정은 전원에 대해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등의 금지)

제10조 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비과세)

제11조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은 특별급부금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없다.

(도도부현이 처리할 사무)

제12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총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제13조 전조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총무대신의 권한 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령(政令) 및 성령(省令)에 위임)

제14조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급부금과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의 경유 및 특별급부금의 지불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수속 그 외 그 집행에 대해 필요한 세칙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무성 설치법의 일부 개정)

제2조 총무성 설치법(1999년 법률 제9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9호의 2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89의 3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 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급부금에 관한 일.

이 유

특정연합국재판 피구금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정신에 입각하여 이러한 사람 및 그 유족에게 특별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본안 시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

본안 시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약 3억엔으로 전망한다.

韓国・朝鮮人元BC級戦犯者・「同進会」

〒185-0082 東京都板橋区高島平7-1-24

TEL : 03-5968-3904, FAX : 03-5383-0590

会長 : 李鶴来

韓国BC級戦犯遺族会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2층

TEL : 02-957-8817, FAX : 02-957-8827

회장 : 강도원